

[별지 서식]			
공동구 접용(사용) 허가 신청서(제3조 관련)			
공동구명			
위치			
기간			
목적			
개요			
접용(사용) 기관	대표자 주소	전화번호	
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공동구접용료등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접용(사용)허가를 신청합니다.			
20 . . . 신청자 (인)			
서울특별시장 귀하			
<p>첨부서류 1. 접용(사용) 위치도            2. 평면도            3. 단면도            4. 접용(체적)산출내역서</p>			
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을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호의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<p>1. 도로 및 도로시설물</p>		서의장"으로 한다.	
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을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호의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<p>1. 도로 및 도로시설물</p>			
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"시설물"이라 한다)을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호의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<p>1. 도로 및 도로시설물</p>			

<p>2. 공동구 3.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 4. 하천복개구조물 5. 하천 및 하천시설물 6. 하수도시설물 7. 기타 도로부속물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도로시설물”이라 함은 차도(자동차전용도로 포함)·보도·한강상교량·일반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임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.</li> <li>“자동차전용도로”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.</li> <li>“공동구”라 함은 지하매설물(전기, 가스, 수도 등의 공급설비, 통신설비, 하수도시설 등)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,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유동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</li> <li>“도로표지”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표지규칙(건설교통부령) 제2조에 규정된 경계·이정·방향·노선 및 기타표지를 말한다.</li> <li>“도로표지시스템”이라 함은 도로표지의 위치·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·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.</li> <li>“무인단속시스템”이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, 검지시설(도로상에 매설), 제어기,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·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</li> <li>“지능형교통체계”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·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·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·처리·보관·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.</li> <li>“도로전광표지”라 함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·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</li> </ol>	<p>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하천복개구조물”이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(육천, 청개천 포함)을 복개하여 도로, 주차장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(기초, 기둥, 상판, 벽체 등)을 말한다.</li> <li>“하천시설물”이라 함은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제방·호안·보·수제·수문·관축시설·육감문 및 빗물펌프장(유수지포함) 등의 시설물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.</li> <li>“하수도시설물”이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,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.</li> <li>“도로부속물”이라 함은 도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시장은 교통관리실장과 건설국장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통관리실장 : 지능형교통체계,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, 도로표지,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(시선유도표지, 시선유도봉, 갈매기표지, 도로반사경 등)</li> <li>건설국장 : 도로시설물, 공동구, 하천복개구조물, 하수도시설물, 하천 및 하천시설물,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등</li> </ol> <p>②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리하며, 필요할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, 시장은 해당 시설물 및 부속물의 유지·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.</p> <p>②관리자는 시설물 및 부속물의 구조 또는 용도 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</p>
---	--

<p>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·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·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.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·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.</p> <p>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"특별법"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과 공동구,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 및 하천 시설물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된 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대하여 시정·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,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안전점검의 실시) ①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·보수·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④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인력·장비 등의 확보) ①관리자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·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①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5년에 1회 이상 실시</li> <li>2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시</li> </ol> <p>②제1항의 정밀안전진단 기관 및 대가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·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10조(사고관리체계의 확립)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·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2장 도로 및 도로시설물</p> <p>제11조(도로공사의 시행) ①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제12조(안전점검의 실시)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</p>
--	---

<p>점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정기점검 : 반기별 1회 이상(육안 및 휴대 장비 등에 의한 점검)</p> <p>2. 정밀점검 : 2년에 1회 이상(육안, 점검기 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)</p> <p>3. 긴급점검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가.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나. 태풍·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다.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라.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</p> <p>제13조(시설물 상태의 구분)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A급 : 안전 및 기능유지가 정상적인 최상의 상태</p> <p>2. B급 : 경미한 손상은 있으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</p> <p>3. C급 :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</p> <p>4. D급 : 주요부재가 노후화(강재의 피로균열, 콘크리트의 전단균열, 침하 등)되어 긴급히 보수·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</p> <p>5. E급 :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의 사용을 즉시 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</p> <p>제14조(위험시설물의 지정) ①관리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시설물을 지정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·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 및 도로시설물별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 보수·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자체없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·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(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·관리) ①관리자는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관리자는 도로 및 터널 등의 조명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·광원의 교환·배선·기기보수 및 사고가로등주 복구 등의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③관리자는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관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장 공동구</p> <p>제17조(공동구의 관리) ①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. 다만,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(이하 이 장에서는 “점용시설”이라 한다)은 각 공동구 점용시설별 점용자(이하 이 장에서는 “점용자”라 한다)가 책임·관리한다. ②관리자는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. ③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등의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,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공사의 시행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8조(공동구 관리협의회 구성·운영) ①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·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며,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 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.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</p>
--

<p>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동구 관련기관의 공무원(수탁기관 소속 임·직원 포함)</li> <li>2. 소방방재본부 소속 소방공무원</li> <li>3.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 임·직원</li> <li>4.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의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</li> <li>⑤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공동구의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공동구의 타 시설물 점용(사용)여부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(공사시기, 공사내용, 공사방법 등)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기타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</li> </ul> <p>④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동구 유지관리기관의 공무원(수탁기관 소속직원 포함)</li> <li>2. 관할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</li> <li>3.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 직원</li> </ul> <p>⑤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동구별 개선사업 시행계획(공사시기, 공사내용, 공사방법 등)에 대한 사항</li> <li>2. 기타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</li> </ul> <p>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⑦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<b>제19조(유지관리도면의 작성)</b> ①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, 준공도면 기타 관련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(이하 "도면"이라 한다)을 작성·관리하고, 변동이 있는 때에는 자체없이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</p> <p>②도면은 공동구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, 공동구 종단도 및 교점부 상세도면, 기타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</p>	<p>③도면에는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관리자는 제2항의 도면외에 공동구의 주요지점에 대하여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⑤관리자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총괄관리자·소방방재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·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0조(안전점검의 실시)</b> ①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·부대시설 및 점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상점검 : 내·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</li> <li>2. 정기점검 : 반기별 1회 이상(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)</li> <li>3. 정밀점검 : 2년에 1회 이상(육안,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점용자 또는 전문용역회사에 용역 시행)</li> <li>4. 긴급점검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</li> <li>나. 대풍·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</li> <li>다.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</li> </ul> <p>라.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</p> <p>②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하는 때에는 누전·화재·누수 및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, 확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<b>제21조(점검 및 정밀안전진단)</b> ①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소관 점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.</p>
--	---

<p>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점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2조(공사의 승인)</b>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 등의 공사 또는 보수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점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공동구의 본체·부대시설 또는 다른 점용시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공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점용시설의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<b>제23조(공사의 시행)</b>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점용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<b>제24조(긴급한 경우의 조치)</b> ① 점용자는 누전·화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점용시설 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긴급조치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<b>제25조(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)</b> 점용시설 등의 설치·관리 또는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.</p> <p><b>제26조(보안에 관한 사항)</b> 점용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따른 보안 및 방재에 관하여 관리자가 정한 공동구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장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</b></p> <p><b>제27조(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</b> ① 관리자는 매년 교통안전·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이하 이 장에서 "유지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도로표지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·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</p> <p>③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로표지의 신설·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도로표지의 세척·도색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도로표지 장애시설 정비(신호등·가로수 등)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·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기타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<b>제28조(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)</b>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, 관리자가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관리자는 도로표지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개신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9조(도로표지의 점검)</b> ① 관리자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점검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점검반 구성 :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되며,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.</li> <li>2. 점검사항 :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(건설교통부령) 제2조 내지 제13조의 사항을 점검한다.</li> </ol> <p><b>제30조(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)</b> 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관리</li> </ol>
--

<p>2. 통신선로 관리</p> <p>3. 기타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 관리</p> <p><b>제31조(지능형 교통체계의 관리업무)</b> ① 지능형 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통관리센터(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, 남산권 교통관리센터) 및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·가공·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</li> <li>2. 전기·통신망 등 관련설비의 운영 및 유지 관리</li> <li>3. 기타 지능형 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 관리</li> </ol> <p>② 제1항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도로순찰업무, 긴급구조업무, 교통방송·홍보업무, 공사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자에게 통보·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32조(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)</b> 관리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,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자체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33조(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)</b> 관리자는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지도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34조(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)</b>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·점용 허가권자(신고에 대한 수리권자를 포함한다)는 허가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5장 하천복개구조물</b></p> <p><b>제35조(점용자, 지정 등)</b> ① 하천복개구조물(이하 "복개구조물"이라 한다)에 설치한 도로·건축물·장비·시설 등(이하 이 장에서 "시설물"이라 한다)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(이하 이 장에서 "점용자"라 한다)가 관리한다.</p> <p>② 각 시설물의 점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(주차장, 적환</li> </ol>	<p>장 포함)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및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.(단, 도로 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·주차장·철도·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).</p> <p>2.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은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, 민간건축물은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.</p> <p>3.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.</p> <p>③ 시장은 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점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36조(안전점검 등)</b> ① 점용자는 복개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의 본체를 특별법의 2종 시설물에 준하여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점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 본체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37조(시설물의 순찰)</b> ① 점용자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복개구조물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점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체없이 시설물의 사용제한·유지보수공사실시·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,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점용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사용제한·사용중지·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점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<b>제38조(하천복개공사 시행)</b>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
---	--

<p><b>제39조(서류비치)</b> ①점용자는 순찰·안전점검·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순찰일지, 안전점검일지</li> <li>2. 작업일지</li> <li>3. 시설물관리카드</li> <li>4.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</li> </ol> <p>②점용자는 제1항 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하천 및 하천시설물</p> <p><b>제40조(안전 및 유지관리계획)</b>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하천 및 하천시설물(이하 이 장에서 "하천시설물"이라 한다)의 점검·정비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1종 및 2종 시설물은 특별법·령에 의한 점검·진단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<b>제41조(안전점검의 실시)</b> ①관리자는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기점검 : 반기별 1회 이상(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)</li> <li>2. 정밀점검 : 2년에 1회 이상(육안,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)</li> <li>3. 긴급점검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</li> <li>나. 태풍·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</li> <li>다.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</li> <li>라.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</li> </ul> </li> </ol> <p>②관리자는 수문, 육감문, 빗물펌프장(유수지포함)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상점검 : 일일 또는 필요시 수시</li> <li>2. 정기점검 : 관리자가 정하는 점검표에 의한 주간·월간·분기 및 연간 점검</li> <li>3. 긴급점검 : 시설물의 긴급상황 발생시</li> </ol> <p><b>제42조(보수조치)</b> ①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관리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,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·보수 및 보강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<b>제43조(서류비치)</b> ①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전점검일지</li> <li>2. 작업일지</li> <li>3.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</li> <li>4. 특별법에 의한 점검·진단 자료</li> <li>5.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</li> </ol> <p>②관리자는 제43조 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 하수도시설물</p> <p><b>제44조(안전 및 유지관리계획)</b>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(환경부)을 준용한다.</p> <p><b>제45조(안전점검의 실시)</b> ①관리자는 하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시점검 :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</li> <li>2. 정기점검 :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</li> <li>3. 정밀점검 : 2년에 1회 이상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)</li> <li>4. 특별점검 : 강우 전·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</li> </ol> <p>②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(이하 "시험소장"이라 한다)은 복개구조물 및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ガ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2항의 조사를 위한 하수ガ스의 채취장소는 관리자와 시험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④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ガ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체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</p>
---

<p>하여야 한다.</p> <p>제46조(기타 도로부속물 관리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이를 책임 관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장 보 칙</p>	<p>제47조(비용의 지원)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

## [별표]

주요시설물 관리기관

구 분		시설물 유지관리 내역	관 리 자
도 로 시 설 물	서울특별시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차도부분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및 보도부분(측구 포함)	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치구청장
	자동차전용도로	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시설물(차도·보도 포함) -지하보도·보도육교 제외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및 녹지·가로수	건설안전관리본부장
	교량	<input type="checkbox"/> 한강상 교량 및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	건설안전관리본부장
	터널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도상의 터널	건설안전관리본부장
	고가차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도상의 고가차도	건설안전관리본부장
	입체교차	<input type="checkbox"/> 입체교차	건설안전관리본부장
	지하차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차도 및 지하보차도	건설안전관리본부장
도 로 부 속 시 설	공동구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구	건설안전관리본부장
	지하보도 및 보도육교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	자치구청장
	가로등 및 기전시설물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전용도로·한강상교량·고가차도·입체교차상의 가로등 <input type="checkbox"/> 터널·지하차도상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	건설안전관리본부장
	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도상의 가로등(보도육교 포함)	자치구청장
		<input type="checkbox"/> 지하보도상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	자치구청장
	지능형교통체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정보수집, 제어, 가공, 제공시스템 및 관련설비와 긴급연락시설의 설치·관리	교통관리실장
	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	<input type="checkbox"/> 버스전용차로 유·무인 단속시스템의 설치·관리	교통관리실장
	도로표지	<input type="checkbox"/> 문안검토	교통관리실장
	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전용도로·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·고가차도·입체교차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	건설안전관리본부장
	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	자치구청장

구 分		시설물 유지관리 내역	관 리 자
	교통안전·관리시설물 (시선유도표지·시선유도봉· 갈매기표지·도로반사경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주관</li> <li>○ 자동차전용도로·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· 터널·고가차도·임체교차·지하차도 등의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</li> <li>○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·관리시설 물 설치 및 관리</li> </ul>	교통 관리 실장  건설 안전 관리본부장  자치구 청장
	기타 도로부속시설물 (방호울타리·중앙분리대·차량진 입금지시설·과속방지시설·미 끄럼방지시설·충격흡수시설· 낙식방지망·절개지·법면·도 로용벽·방음벽·휀呼应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전용도로·서울특별시도상의 교 량·터널·고가차도·임체교차·지하차 도 등의 도로부속시설 설치 및 관리</li> <li>○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부속시설 설치 및 관리</li> </ul>	건설 안전 관리본부장  자치구 청장
하 천 시 설 물	하 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, 지방1·2급 하천 (단, 한강은 한강 관리사업소장이 유지관리)</li> <li>○ 재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</li> </ul>	자치구 청장
	빗물펌프장 (유수지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조물,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</li> <li>○ 호안불록, 용벽, 도수로, 우수토설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등</li> </ul>	자치구 청장
	수 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조물, 문짝, 권양기 시설물 등</li> </ul>	자치구 청장
하 수 도 시 설 물	육 갑 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강의 육갑문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 입로 시설물</li> <li>○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</li> <li>○ 문짝, 권양기 시설물, 통로청소, 수문개폐</li> <li>○ 기타 하천 육갑문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</li> </ul>	한강 관리사업소장  자치구 청장
	하수처리종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처리종말시설 및 부대시설</li> </ul>	하수처리사업소장 (위탁업체 대표)
복 개 구 조 물	차 집 관 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</li> </ul>	하수처리사업소장 (위탁업체 대표)
	하 수 관 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</li> </ul>	자치구 청장
	하천복개구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천복개구조물 (단, 청계천의 광교~신설동 구간과 육천 의 서소문로 경계~한강 합류지점 구간 은 건설 안전 관리본부장이 유지 관리)</li> </ul>	주기농별 점용기관(부서)의장

- 비 고 : 자치구 청장 유지 관리하는 시설

-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설
- ② 자치구 도상의 도로 및 도로 시설
- ③ 자치구 관리의 하천 및 하천 시설
- ④ 사무 위임 조례,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설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-bottom: 10px;"> <tr>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928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1년 9월 일 도시관리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나. 제출일자 : 2001. 8. 20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1. 8. 22 라. 상정일자 -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 관리위원회(2001.9.7)상정, 제안설명, 검토 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계획국장 : 진철훈)</p> <p>가. 제안이유 ○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서 지정된 체비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의 관리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가. 체비지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)</p> <p>나. 매각대금은 일시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8조)</p> <p>1) 체비지의 매각 사유가 서울특별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: 분할납부 기간과 이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함.</p> <p>2)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 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: 10년 이내, 연 5%의 이자</p> <p>3)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추천한 사립학교 범 인이 초·중·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: 10년 이내, 연 5%의 이자</p> <p>4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</p>	의안 번호	928	<p>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 시장용지를 매각하는 때 : 5년 이내, 연 8%의 이자</p> <p>5)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체비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건축물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한 체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: 5년 이내, 연 8%의 이자</p> <p>마. 지산문이 전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매각대금의 5% 이내에서 할인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지산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매각이 촉진되도록 함(안 제9조)</p> <p>라. 체비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에 해당하는 체비지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</p> <p>1)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</p> <p>2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비지</p> <p>3) 농·축·수산업협동조합이 농·축·수산 물직판장을 직접 설치·운영하고자 요청 하는 체비지</p> <p>4)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의 전시 판 매장을 설치·운영하고자 요청하는 체비지</p> <p>5)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가 출자·출연한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 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비지</p> <p>마. 체비지의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, 대부료 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</p> <p>바. 체비지를 신탁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, 체비지의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 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(안 제24조)</p> <p>사. 체비지 관리사무의 일부를 체비지소재 구 청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 료·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30%를 당해 자치구에 귀속시킬도록 함(안 제25조)</p> <p>아. 체비지의 매각,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 과·징수절차 등은 "서울특별시공유재산 관리조례" 및 "지방재정법시행령"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함(안 제26조)</p> <p>4. 참고법령</p>
의안 번호	928		